

● 제295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 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0. 06.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 1620, 1621, 1622

I. 결산안 개요

1. 제안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0. 05. 29.

다. 회 부 일 : 2020. 06. 09.

I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4,261,095백만원

○ 징수결정액 : 4,249,854백만원

○ 실제수납액 : 4,242,917백만원

○ 미 수 납 액 : 6,513백만원

○ 결 손 처 분 : 424백만원

○ 다음년도 이월액 : 해당없음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8%(전년도 99.8%)임.

<표> 2019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 액	수납률 (B/A)
합계	4,261,095	4,249,854	4,242,917	424	6,513	99.8%
일반회계	2,809,238	2,797,493	2,790,590	424	6,479	99.8%
200 세외수입	53,486	55,195	48,292	424	6,479	87.5%
210 경상적세외수입	13,851	13,999	13,542	0	457	96.7%
211 재산임대수입	1,126	1,089	1,083	0	7	99.4%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126	1,089	1,083	0	7	99.4%
213 수수료수입	33	36	36	0	0	100.0%
213-01 증지수입	33	36	36	0	0	100.0%
214 사업수입	12,443	12,371	11,970	0	401	96.8%
214-02 주차요금수입	75	70	70	0	0	100.0%
214-09 기타사업수입	12,368	12,300	11,899	0	401	96.7%
216 이자수입	250	503	454	0	49	90.2%
216-06 기타이자수입	250	503	454	0	49	90.2%
220 임시적세외수입	39,635	41,197	34,750	424	6,022	84.4%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0	218	6	0	212	2.8%
223-03 변상금	0	218	6	0	212	2.8%
224 기타수입	36,630	35,223	32,126	0	3,097	91.2%
224-01 불용품매각대	19	67	66	0	1	99.0%
224-04 시·도비반환금수 입	28,595	27,865	24,776	0	3,090	88.9%
224-06 그외수입	8,016	7,291	7,284	0	7	99.9%
225 지난연도수입	3,004	5,755	2,618	424	2,712	45.5%
225-01 지난연도수입	3,004	5,755	2,618	424	2,712	45.5%
300 지방교부세	432	162	162	0	0	100.0%
310 지방교부세	432	162	162	0	0	100.0%
311 지방교부세	432	162	162	0	0	100.0%
311-02 특별교부세	432	162	162	0	0	100.0%
500 보조금	2,742,003	2,733,949	2,733,949	0	0	100.0%
510 국고보조금등	2,742,003	2,733,949	2,733,949	0	0	100.0%
511 국고보조금등	2,742,003	2,733,949	2,733,949	0	0	100.0%
511-01 국고보조금	2,726,367	2,718,312	2,718,312	0	0	100.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보조금	8,368	8,368	8,368	0	0	10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 액	수납률 (B/A)
		511-03 기금	7,268	7,268	7,268	0	0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318	8,187	8,187	0	0	100.0%
		710 보전수입등	13,318	8,187	8,187	0	0	100.0%
		712 전년도이월금	13,158	8,117	8,117	0	0	10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 액	13,158	8,117	8,117	0	0	100.0%
		713 융자금원금수입	160	71	71	0	0	10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 입	160	71	71	0	0	1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51,857	1,452,361	1,452,327	0	34	100.0%
200		세외수입	2,621	3,352	3,318	0	34	99.0%
		210 경상적세외수입		195	195	0	0	100.0%
		216 이자수입		195	195	0	0	1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95	195	0	0	1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621	3,157	3,123	0	34	98.9%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96	223	189	0	34	84.7%
		223-01 과징금	96	223	189	0	34	84.7%
		224 기타수입	2,525	2,934	2,934	0	0	100.0%
		224-06 그외수입	2,525	2,934	2,934	0	0	100.0%
500		보조금	678,572	678,163	678,163	0	0	100.0%
		510 국고보조금등	678,572	678,163	678,163	0	0	100.0%
		511 국고보조금등	678,572	678,163	678,163	0	0	100.0%
		511-01 국고보조금	678,572	678,163	678,163	0	0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0,664	770,846	770,846	0	0	100.0%
		710 보전수입등	2,092	2,698	2,698	0	0	100.0%
		711 잉여금	2,092	2,698	2,698	0	0	100.0%
		711-01 순세계잉여금	2,092	2,698	2,698	0	0	100.0%
		720 내부거래	768,572	768,148	768,148	0	0	100.0%
		721 전입금	768,572	768,148	768,148	0	0	1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68,572	768,148	768,148	0	0	10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6,605,672백만원

○ 예산증감 : 449,931백만원

○ 예산현액 : 7,055,603백만원

○ 지출액 : 6,949,629백만원

○ 이월액 : 28,179백만원

○ 보조금반납금 : 8,995백만원

○ 불용액 : 68,800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0.9% 발생(전년도 0.6%)

-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68,800	20,439	0	23,166	96	25,099	0

<표> 2019년도 복지정책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 액 (A)	지출액 (B)	다음연 도 이월액 (C)	보조 금 반납 금 (D)	불용액 (E=A-B- C-D)	불용 률 (%)
복지정책실 합계	7,055,603	6,949,629	28,179	8,995	68,800	0.9%
일반회계	5,585,332	5,492,402	20,803	8,995	63,132	1.1%
복지정책과	1,663,621	1,630,660	114	3,583	29,264	1.7%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894,678	862,279	114	3,583	28,702	3.2%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호업무 등 추진	112,504	105,821	0	47	6,637	5.9%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710,609	688,021	0	1,484	21,104	3.0%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36,671	33,575	114	2,053	930	2.5%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 공	34,893	34,862	0	0	31	0.1%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372	234	0	0	138	37.1%
기본경비	372	234	0	0	138	37.1%
일반예산(재무활동)	768,572	768,148			424	0.1%
보전지출(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768,572	768,148			424	0.1%
지역돌봄복지과	245,515	241,046	1,878	0	2,591	1.0%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52	52	0	0	0	0.0%
기본경비	52	52	0	0	0	0.0%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 원	245,462	240,993	1,878	0	2,591	1.1%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95,684	95,425	0	0	259	0.3%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 공	5,089	3,209	1,878	0	2	0.0%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144,690	142,360	0	0	2,330	1.6%
어르신복지과	2,285,991	2,263,065	15,860	63	7,002	0.3%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2,285,853	2,262,927	15,860	63	7,001	0.3%
어르신 영양 인프라 구축	241,310	218,600	15,860	63	6,787	2.8%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1,974,956	1,974,946	0	1	9	0.0%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36,840	36,635	0	0	205	0.6%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32,747	32,747	0	0	0	0.0%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52	52	0	0	0	0.0%
기본경비	52	52	0	0	0	0.0%
일반예산(재무활동)	86	85	0	0	1	0.4%
보전지출(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86	85	0	0	1	0.4%
인생이모작지원과	281,228	274,196	185	994	5,853	2.0%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281,191	274,159	185	994	5,853	2.1%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191,864	187,069		994	3,802	2.0%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89,326	87,091	185	0	2,051	2.3%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 액 (A)	지출액 (B)	다음연 도 이월액 (C)	보조 금 반납 금 (D)	불용액 (E=A-B- C-D)	불용 률 (%)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37	37	0	0	0	0.0%
기본경비	37	37	0	0	0	0.0%
장애인복지정책과	238,545	229,998	102	574	7,870	3.2%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238,350	229,810	102	574	7,864	3.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69,015	161,392		462	7,161	4.2%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62,289	61,679	0	75	536	0.9%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1,620	1,561	0	0	59	3.6%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5,427	5,177	102	38	109	2.0%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55	55	0	0	0	0.0%
기본경비	55	55	0	0	0	0.0%
일반예산(재무활동)	140	134	0	0	6	4.5%
보전지출(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40	134	0	0	6	4.5%
장애인자립지원과	700,453	690,516	1,165	1,883	6,889	0.9%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700,297	690,366	1,165	1,883	6,883	1.0%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667,356	660,456	287	1,876	4,737	0.7%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11,544	9,070	878	7	1,589	13.8%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21,397	20,841	0	0	557	2.6%
재무활동(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112	106	0	0	6	52.2%
보전지출(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112	106	0	0	6	52.2%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44	44	0	0	1	0.2%
기본경비	44	44	0	0	1	0.2%
자활지원과	169,980	162,921	1,498	1,897	3,664	2.1%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57,430	53,237	1,498	101	2,595	4.5%
노숙인 자활지원	32,836	29,843	1,498	0	1,495	4.6%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4,594	23,394	0	101	1,099	4.5%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112,509	109,644	0	1,796	1,069	0.9%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112,509	109,644	0	1,796	1,069	0.9%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40	40	0	0	0	0.0%
기본경비	40	40	0	0	0	0.0%
도시개발특별회계	17,414	9,100	7,377	0	938	5.4%
인생이모작지원과	17,414	9,100	7,377	0	938	5.4%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17,414	9,100	7,377	0	938	5.4%
은퇴후제2인생설계지원	17,414	9,100	7,377	0	938	5.4%
균형발전특별회계	1,000	1,000	0	0	0	0.0%
인생이모작지원과	1,000	1,000	0	0	0	0.0%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1,000	1,000	0	0	0	0.0%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1,000	1,000	0	0	0	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51,857	1,451,857			4,729	0.3%
복지정책과	1,451,857	1,451,857			4,729	0.3%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100	100	0	0	0	0.0%
인력운영비	100	100	0	0	0	0.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 액 (A)	지출액 (B)	다음연 도 이월액 (C)	보조 금 반납 금 (D)	불용액 (E=A-B- C-D)	불용 률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1,451,757	1,447,027	0	0	4,729	0.3%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1,451,757	1,447,027	0	0	4,729	0.3%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 총 11건, 4,622만원

다. 예산 이체 : 총 25건, 2,755,407백만원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총 51건, 10,962백만원

마. 예비비 사용 : 총 1건, 12,882백만원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총 19건, 28,179백만원

사. 국고보조금 집행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①	집행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합계	5,365,726	5,357,262	5,299,881	16,285	41,347
당해(소계)	5,356,457	5,347,993	5,294,380	12,534	41,331
일반회계	3,902,635	3,894,580	3,845,585	12,534	36,712
의료급여기금특별회 계	1,451,857	1,451,448	1,447,127	0	4,321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1,965	1,965	1,668	0	298
명시이월(소계)	6,892	6,892	3,139	3,751	1
일반회계	6,892	6,892	3,139	3,751	1
사고이월(소계)	2,377	2,377	2,362	0	15
일반회계	2,377	2,377	2,362	0	15

3.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17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계	326,778	1,110	10,548	9,438	327,888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3,436	△418	403	821	13,018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5,682	△297	2,171	2,468	25,385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7,902	88	859	771	7,99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79,758	1,737	7,115	5,378	281,495

4. 채권현재액 :30,667백만원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9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토지 6,864,522㎡ 1,022,123백만원,
- 건물 255,403㎡ 347,845백만원,
- 기타 23건 1,678백만원,

총 1,371,646만원 상당의 금액

<표> 2019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백만원)

구분	2018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19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계	1,367,908	6,090	2,352	1,371,646	
행정 재산	계	1,358,142	6,090	2,352	1,361,880
	공용재산	633,182	2,066	1,596	633,652
	공공용재산	718,676	4,024	756	721,944
	기업용재산	6,284			6,284
	보존재산	-			
일반재산	9,766			9,766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9년도 말 복지정책실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27개, 현재액 71백만원
으로 나타남.

<표> 2019년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18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19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36	2	-	2	-	11	11	27
	금액	89	1	-	1	-	19	19	71
일반회계	수량	36	2	-	2	-	11	11	27
	금액	89	1	-	1	-	19	19	71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세입 결산 검토

1) 세입결산 총괄 개요

○ 2019 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조 8,092억 3천 8백만원으로 이 중 2조 7,974억 9천 3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2조 7,905억 9천만원을 실제 수납해 징수결정액 대비 99.8%를 수납한 것으로 나타남.

<표>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 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복지정책실	2,809,238	2,809,238	2,797,493	2,790,590	424	6,479	99.8%
복지정책과	514,733	514,733	500,294	499,618	418	258	99.9%
지역돌봄복지과	29,529	29,529	28,944	28,714	0	231	99.2%
어르신복지과	1,749,495	1,749,495	1,751,340	1,749,346	5	1,989	99.9%
인생이모작지원과	80,636	80,636	87,773	86,172	0	1,601	98.2%
장애인복지정책과	58,179	58,179	58,877	57,549	0	1,328	97.7%
장애인자립지원과	289,799	289,799	287,437	286,798	0	639	99.8%
자활지원과	86,868	86,868	82,827	82,393	1	433	99.5%

○ 2019년도 복지정책실 과별 징수액은 위와 같으며 각 과별 징수결정액은 어르신복지과 (1조 7,513억), 장애인복지정책과(588억), 복지정책과 (5,002억)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장 수납률이 저조한 과는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징수결정액 588억 7천 7백만원 가운데 575억 4천 9백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수납률이 97.7%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금이 2억 1천 8백만원을 징수결정한 데 비해 실제로는 6백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수납률이 2.8%에 그치는 것이 주요 사유임.

<표> 2019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 액	수납률 (B/A)
합계	4,261,095	4,249,854	4,242,917	424	6,513	99.8%
일반회계	2,809,238	2,797,493	2,790,590	424	6,479	99.8%
200 세외수입	53,486	55,195	48,292	424	6,479	87.5%
210 경상적세외수입	13,851	13,999	13,542	0	457	96.7%
211 재산임대수입	1,126	1,089	1,083	0	7	99.4%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126	1,089	1,083	0	7	99.4%
213 수수료수입	33	36	36	0	0	100.0%
213-01 증지수입	33	36	36	0	0	100.0%
214 사업수입	12,443	12,371	11,970	0	401	96.8%
214-02 주차요금수입	75	70	70	0	0	100.0%
214-09 기타사업수입	12,368	12,300	11,899	0	401	96.7%
216 이자수입	250	503	454	0	49	90.2%
216-06 기타이자수입	250	503	454	0	49	90.2%
220 임시적세외수입	39,635	41,197	34,750	424	6,022	84.4%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0	218	6	0	212	2.8%
223-03 변상금	0	218	6	0	212	2.8%
224 기타수입	36,630	35,223	32,126	0	3,097	91.2%
224-01 불용품매각대	19	67	66	0	1	99.0%
224-04 시·도비반환금수 입	28,595	27,865	24,776	0	3,090	88.9%
224-06 그외수입	8,016	7,291	7,284	0	7	99.9%
225 지난연도수입	3,004	5,755	2,618	424	2,712	45.5%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 액	수납률 (B/A)
		225-01 지난연도수입	3,004	5,755	2,618	424	2,712	45.5%
300		지방교부세	432	162	162	0	0	100.0%
	310	지방교부세	432	162	162	0	0	100.0%
		311 지방교부세	432	162	162	0	0	100.0%
		311-02 특별교부세	432	162	162	0	0	100.0%
500		보조금	2,742,003	2,733,949	2,733,949	0	0	100.0%
	510	국고보조금등	2,742,003	2,733,949	2,733,949	0	0	100.0%
		511 국고보조금등	2,742,003	2,733,949	2,733,949	0	0	100.0%
		511-01 국고보조금	2,726,367	2,718,312	2,718,312	0	0	100.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보조금	8,368	8,368	8,368	0	0	100.0%
		511-03 기금	7,268	7,268	7,268	0	0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318	8,187	8,187	0	0	100.0%
	710	보전수입등	13,318	8,187	8,187	0	0	100.0%
		712 전년도이월금	13,158	8,117	8,117	0	0	10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 액	13,158	8,117	8,117	0	0	100.0%
		713 융자금원금수입	160	71	71	0	0	10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 입	160	71	71	0	0	1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51,857	1,452,361	1,452,327	0	34	100.0%
200		세외수입	2,621	3,352	3,318	0	34	99.0%
	210	경상적세외수입		195	195	0	0	100.0%
		216 이자수입		195	195	0	0	1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95	195	0	0	1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621	3,157	3,123	0	34	98.9%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96	223	189	0	34	84.7%
		223-01 과징금	96	223	189	0	34	84.7%
		224 기타수입	2,525	2,934	2,934	0	0	100.0%
		224-06 그외수입	2,525	2,934	2,934	0	0	100.0%
500		보조금	678,572	678,163	678,163	0	0	100.0%
	510	국고보조금등	678,572	678,163	678,163	0	0	100.0%
		511 국고보조금등	678,572	678,163	678,163	0	0	100.0%
		511-01 국고보조금	678,572	678,163	678,163	0	0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0,664	770,846	770,846	0	0	100.0%
	710	보전수입등	2,092	2,698	2,698	0	0	100.0%
		711 잉여금	2,092	2,698	2,698	0	0	100.0%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 액	수납률 (B/A)
	711-01 순세계잉여금	2,092	2,698	2,698	0	0	100.0%
	720 내부거래	768,572	768,148	768,148	0	0	100.0%
	721 전입금	768,572	768,148	768,148	0	0	1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68,572	768,148	768,148	0	0	100.0%

2) 세입예산 운용 주의 필요

- 복지정책실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입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세입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수추계를 할 필요성이 있음.

<표>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 차이발생(20%)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과부족액(B-A)	과부족 상세사유	차액비율
기타 이자 수입	249,582	502,665	453,549	203,967	최근 3년간 징수실적 평균으로 추계하여 편성. 정확한 추계 어려움	81.7%
불용 품매 각대	19,200	67,070	66,405	47,205	서울시각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장애인복지콜 노후차량(32대) 매각에 따른 낙찰차액	245.9%
특별 교부 세	432,000	162,000	162,000	△270,000	2019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폭염대책 추진비(홍보)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예방활동 홍보비	-62.5%

예산 과목	예산액(A)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 액(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차액비율
					162백만원은 인생이모작과 배분, 나머지는 상황대응과로 배분되었음.	
국고 보조 금 사용 잔액	13,157,907	8,116,608	8,116,608	△5,041,299	◦ 당초예산액대비 변경내시 등으로 실제 교부된 국비금액이 작음	-38.3%
민간 융자 금 회수 수입	159,594	70,519	70,519	△89,075	기초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70%이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개인파산, 사업부진 등 상황이 곤란한 경우가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상황이 늦어져 징수부족액 발생	-55.8%

-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당초 예산액 대비 변경내시가 발생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변경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비용 역시 적지 않아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과정 등을 통해 세입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의 경우 상환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상환지연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세입추정이 필요함.

<표>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 차이발생(20%)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차액비율
공공예금 이자수입	0	194,695	194,695	194,695	◦ 공공예금이자 수입 세입예산 미편성에 따른 초과수납 발생	100.0%
과징금	95,936	223,121	188,984,520	93,049	◦ 보건복지부에 서 통보하는 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 추가 부과 사유 발생으로 인한 초과수납	97.0%
순세계잉 여금	2,091,9 07	2,698,2 92	2,698,292	606,385	◦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으로 수납에 따른 초과수납	29.0%

-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공공예금통장에 국고보조금이 세입 조치된 후 지출하
기까지 예치일수 동안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이 공공예금통장
에 있는 기간은 통상 5~1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국고보조금 통장의 기준일 잔액, 이율 등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했을 때 세입예산추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에도 수납
내역이 발생한 내역들은 미편성을 지양하고 매년 발생하는 평균금액 등을
반영해 차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3) 부족 수납분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이 과다한 차이가 발생(20%이상)한 사업은 다음 2건으로 변상금 2억 1천 8백만원 중 618만원을 수납해 과부족액이 2억 1천 2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난연도에서 보조금 잔액, 발생이자 미반납액 등으로 수납된 금액이 전체 57억 5천 4백만원 중 26억 1천 8백만원으로 31억 3천 6백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남.

<표>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 과다한 차이 발생 사업 (20% 이상)

(단위: 천원, %)

예산 과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과부족액(B-A)	과부족 상세사유	차액비 율
변상금		218,478	6,187	△212,291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건에 대한 미납부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음	-97.2%
지난연 도추입	3,004,144	5,754,729	2,618,282	△3,136,446	지난연도 보조금 잔액, 발생이자 미반납액 등으로 자치구 추경 미편성 등으로 부족수납	-54.5%

- 이 중 변상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샘’에서 점유 중인 시유지와 관련한 과거 변상금 부과 누락 건에 대하여 2019년도 예산 승인 이후 부과 결정(2019년 4월 최초 변상금 부

과)된 사항에 대한 징수 결정액 21,099만원과 어르신복지과의 서울추모
 공원 인근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결정액 748만원등임. 이
 중 어르신복지과의 변상금 부과 금액 중 618만원만 수납되었음.

< 사유지 점유 개요 >

□ 시설물 현황

재산종류	재산소재지	구 분	면적(m ²)	지목·구조	비고
행정재산	양천구 신정동 162-49	토지	1,580	대	도시계획 사회복지시설, 준공일 1986.9.22
		건물	442.32	철근콘크리트	

□ 운영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샘’ (‘99.3.3 개원, 시설장 이정우)

- 장애인 30명 이용, 종사자 4명, 운영법인 프리웰(대표 김정하)

- 용도별 사용면적

(단위 m²)

계	작업장1(원장실, 사무실 포함)	작업장2	창고	화장실	샤워실	초소	기타
442.32	261.16	81.32	55.21	2.31	33.06	5.95	3.31

□ 점 유 자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구 석암재단)

- 점용기간 : 1987.11.1.~ 현재.

- 사용목적 : 법인사무실 및 장애인직업재활사업 등으로 활용

○ 변상금 부과 사유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샘’(양천구 신정동 162-49 일대 토지 및 건물)에서 1999년 3월부터 무상
 점유한 사유지에 대하여, 당시 재산관리관인 임대주택과에서 임대료 부과를
 누락하면서 발생하였음.

○ 이후 장애인복지정책과는 2015년 3월 동 부지 재산관리관으로 변경되면서
 무상감면 근거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차례¹⁾에 걸쳐

1) 1차: '15.9.25~'17.9.24(2년) 2차: '17.9.25~'19.9.24(2년), 3차: '19.9.25~'21.9.24.(2년)

6년간 무상 감면²⁾을 승인한 바 있음.

- 그러나 과거 무단점유기간('13.12.24~'15.9.24)에 대한 변상금은 2018년 12월 최초로 부과(99백만원)하게 되는데³⁾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에서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법률자문을 의뢰⁴⁾하였고 변상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자문의견⁵⁾에 근거하여 기존 변상금 전액 감액(취소) 후 재부과 계획을 수립하였음⁶⁾.

< 변상금 부과 금액 산정 내역 >

- 변상금 부과 금액 : 총 191,837,450원(당초 99,041,140원)
- 토지 : 185,307,508원

2) 「장애인복지법」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시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조치 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20478(2018.12.11.)

4) 이의 신청에 따른 변상금 부과 관련 법률자문 의뢰 내용

- ①사용기한을 초과한 점유자에게 변상금 면제가 소급 가능한지 여부
- ②법인이 시유재산 사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전통지나 협의 없이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따라 변상금 부과 자체의 위법성 여부 판단.

5) 변상금 부과 근거 및 산정 내역(법률자문결과)

- ①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 ②부과기간 : 변상금 부과 고지서 송달일인 18.12.24 이후로 5년 소급하여 부과기간 산정(「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4조)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 ③부과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평정가격의 5% 이상으로 함

※ 재산가액: 해당건물은 일반건축물로 신축('86년) 이후 거래내역이 없어 시가표준액과 건축면적을 곱한 값을 재산가액으로 적용하며, '13년 재산가액은 공시된 시가표준액이 없어 별도 감정평가 의뢰 시 부과금액 대비 감정평가 의뢰비용이 과다하여 실익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14년 시가표준액 적용(출처:장애인복지정책과)

연도	부과기간	재산가액	요율	변상금 가산율	부과금액(안)
소계					185,307,508원
2013	'13.12.24~'13.12.31.	1,573,680천 원	5.0%	120%	2,069,497원
2014	'14.1.1~'14.12.31.	1,719,040천 원			103,142,400원
2015	'15.1.1~'15.9.24.	1,824,900천 원			80,095,611원

- 건물 : 6,529,951원

연도	부과기간	재산가액	요율	변상금 가산율	부과금액(안)
소계					6,529,951원
2013	'13.12.24~'13.12.31.	65,021천 원	5.0%	120%	85,507원
2014	'14.1.1~'14.12.31.	65,021천 원			3,901,262원
2015	'15.1.1~'15.9.24.	57,944천 원			2,543,182원

※ 산정식 : 재산가액×대부(사용)요율×120%×점유기간(최장5년)

○ 2019년 4월 3일 최초 변상금 부과 통지 이후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3차에 걸쳐 납부독촉고지⁷⁾ 하였으나 미납되었고, 2019년 8월 채권확보를 위해 법인 소유 부동산 압류⁸⁾를 완료한 상황임(김포시 소재, 공시지가

6) '시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조치 수정계획',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5334(2019.3.15.)

7) 1차 납부독촉 고지 : 19.5.2 (납기일 '19.5.17), 2차 납부독촉 고지 : 19.5.27 (납기일 '19.6.7), 3차 납부독촉 고지 : 19.6.14 (납기일 '19.6.23)

8)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취고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4억3,900만원).

- 동 변상금은 ‘2020년 고액체납 세외수입 인수계획⁹⁾’에 따라 38세금징수와 체납징수 대상으로 인수인계 된 상황인데, 특히 프리웰의 시유재산변상금은 1억원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장애인복지정책과는 38세금징수과와 업무 협조를 통하여, 미납 변상금에 대한 징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장애인복지정책과는 2015년 3월 재산관리관으로 변경되고, 같은 해 9월 무상사용중인 시유지에 대하여 무상 감면을 승인하면서, 이전 재산관리관(임대주택과)의 관리 기간 중 발생한 시유지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 소멸시효 경과로 3년 이상의 세외수입이 과소 확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¹⁰⁾
- 향후 관련 업무 추진 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복지정책실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 무상사용을 허가해 준 재산에 대하여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9) 2020년 고액 세외수입 체납 이관계획 재무국 38세금징수과-4164(2020.2.21.)

• 주요내용 : 2019 회계연도 신규발생한 시 본청소관 1백만원 이상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한 부서로부터 인 수하여 전문화된 체납징수로 세입증대

10)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해당 시유재산을 1987년 부터 점유하고 있었으나, 87.12~97.5까지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수납.

2 세출 결산 검토

1) 세출결산 총괄 개요

- 2019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액은 5조 5,853억 3천 2백만원이고, 이 중 5조 4,924억 2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132백만원(불용률 1.1%)으로 나타남,
-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과는 어르신복지과로 전체 예산 2조 2,859억 9천 1백만원 가운데 2조 2,630억 6천 5백만원을 집행해 99%의 집행률을 보였고, 집행률이 가장 낮은 과는 자활지원과로 전체 예산 1,699억 8천만 원 가운데 1,629억 2천 1백만원을 지출해 95.8%의 집행률을 보임.

<표>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반 납액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합 계	5,332,387	5,585,332	5,492,402	20,803	8,995	63,132	98.9
복지정책과	1,513,540	1,663,621	1,630,660	114	3,583	29,264	98.3
지역돌봄복지과	241,187	245,514	241,046	1,879	0	2,591	98.2
어르신복지과	2,261,107	2,285,991	2,263,065	15,860	63	7,002	99.0
인생이모작지원과	262,693	281,228	274,196	184	994	5,853	98.0
장애인복지정책과	233,263	238,545	229,998	102	574	7,870	96.4
장애인자립지원과	625,229	700,453	690,516	1,165	1,883	6,889	98.6
자활지원과	195,368	169,980	162,921	1,498	1,897	3,664	95.8

<표> 복지정책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예산액 (본예산)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 액 (A-B-C- D)	집행률 (B/A)	2020 예산액 (본예산)
합 계	1,273,284	1,470,271	1,457,227	7,377	0	5,668	99.6	1,515,033
복지정책과	1,255,870	1,451,857	1,447,127	0	0	4,730	97.7	1,500,21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55,870	1,451,857	1,447,127	0	0	4,730	97.7	1,500,219
인생이모작지원과	17,414	18,414	10,100	7,377	0	938	94.9	13,788
도시개발특별회계	17,414	17,414	9,100	7,377	0	938	94.7	13,788
균형발전특별회계	0	1,000	1,000	0	0	0	100.0	0
장애인자립지원과	0	0	0	0	0	0	0	1,025
균형발전특별회계	0	0	0	0	0	0	0	1,025

○ 2019회계연도 복지정책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조 4,702억 7천 1백만원이고, 이 중 1조 4,619억 5천 7백만원을 집행해, 집행잔액은 56억 6천 7백만원 (불용률 0.4%)으로 나타남.

2) 예산의 변경사용

(1) '19 회계연도 예산의 전용, 변경 및 이체 사용

○ 복지정책실의 2019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11건, 46억 2천 2백만원, 예산이체는 총 18건, 1조 4,685억 3천 7백만원, 예산변경은 총 49건, 88억 5천 2백만원으로 나타남.

- 특별회계 예산변경은 총 2건, 2억 1천 1백만원, 예산이체는 총 7건, 1조 2,558억 7천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표> 2019년도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이용	전용	변경	이체
건수	-	11	49	18
승인금액	-	4,622	8,852	1,469,537

<표> 2019년도 복지정책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이용	전용	변경	이체
건수	-	-	2	7
승인금액	-	-	2,110	1,255,870

- 예산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금번 결산안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①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2019회계연도의 예산 전용 건수와 금액은 11건, 46억 2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전용 건수 7건, 20억 3천 7백만원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사용 내용은 사업의 운영예산 및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2건)이며,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확보(5건), 고용노동부 시범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비 미확보(1건), 시장방침에 따른 추가 소요액 확보(1건), 서울역 무료진료소 이전에 따른 공사비 등 확보(2건) 로 나타남.

<표> 2019년 복지정책실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연번	과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전용후 예산집행상황 (금액, %)	사유
					감액	증액			
1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기타자본이전	397,300,000	90,000,000		19-07-31	7,966,734,070	돌봄정책 컨퍼런스 개최 관련 예산 부족분 확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411,000,000		90,000,000		96.0%	
2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185,280,000	6,100,000		19-09-19	372,232,640	복지정책 제안공모전 우수정책 시상금 지급에 맞는 통계목 필요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기타보상금			6,100,000		93.7%	
3	어르신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 시행 분담금	사회보장적수혜 금	180,608,243, 000	860,000,000		19-11-26	1,972,555,572,000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매칭분 확보
		기초연금 지급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954,972,98 8,000		860,000,000		100.0%	
4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의료복지 시설 운영(요양)	사회복지사업보 조	3,805,048,00 0	600,000,000		19-11-26	1,972,555,572,000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매칭분 확보
		기초연금 지급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955,832,98 8,000		600,000,000		100.0%	

연번	과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전용후 예산집행상황 (금액, %)	사유
					감액	증액			
5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데이케어 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3,370,000,000	1,100,000,000		19-11-26	1,972,555,572,000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매칭분 확보
		기초연금 지급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56,432,988,000		1,100,000,000		100.0%	
6	장애인복지정책과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사무관리비	960,124,000	955,124,000		19-03-25	805,364,000	고용노동부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이 18년12월에 확정되어 시비 미확보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955,124,000		71.9%	
7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7,671,454,000	426,000,000		19-11-29	18,985,793,650	2019년 장애수당(기초,차상위 등) 국고보조금 증액 변경내시 통보에 의거 시비 매칭을 위해 예산 전용
		장애수당-기초	사회보장적수혜금	18,254,000,000		426,000,000		99.4%	
8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7,245,454,000	330,000,000		19-11-29	11,372,826,000	2019년 장애수당(기초,차상위 등) 국고보조금 증액 변경내시 통보에 의거 시비 매칭을 위해 예산 전용
		장애수당-차상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0,822,000,000		330,000,000		99.0%	

연번	과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전용후 예산집행상황 (금액, %)	사유
					감액	증액			
9	자활지원 과	노숙인 등 일자리지원	사회복지사업보 조	10,315,112,0 00	137,000,000		19-12-11	5,445,302,100	동자동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공사 (행정2부시장방침 19.10월) -도기분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상주감리용역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따라 추가소요액 확보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시설비	945,000,000		137,000,000		75.6%	
10	자활지원 과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무관리비	38,700,000	38,700,000		19-11-26	4,927,728,870	서울역무료진료소 이전에 따른 공사비 등 확보
		노숙인 등 의료지원	민간위탁사업비	178,000,000		38,700,000		97.4%	
11	자활지원 과	노숙인 등 의료지원	민간위탁금	966,560,000	79,028,000		19-11-26	4,927,728,870	서울역무료진료소 이전에 따른 공사비 등 확보
		노숙인 등 의료지원	민간위탁사업비	216,700,000		79,028,000		97.4%	

② 예산의 변경

- 예산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9회계연도 예산변경 사용 건수는 총 51건, 109억 6천 2백만원으로 2019회계연도 24건, 1,149억 5천 2백만원에 비해 예산액은 감소했으나 변경 사용의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집행은 행정청의 행정행위이므로 예산액의 크기가 작더라도 하더라도 예산 심의 이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또한 2018회계연도 24건의 변경사용에 비해 2019회계연도 51건으로 110% 증가한 변경사용은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한 것 보다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예산변경 중 일부 항목은 집행부가 예산 편성 당시 예산통계목을 오편성(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하여 발생하거나 이미 입법예고가 이루어진 사항(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사업)들에 대한 준비 부족 때문으로 보이는 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임.

<표> 2019 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예산변경 현황

(단위: 천원, %)

연번	과목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 예산집행상황 (금액, %)	변경사유
	과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복지정책과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0		2019-10-20	11,385,949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액 증액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 자사업 중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간 사업비 조정에 따른 증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0		99.7%	
2	복지정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0		2019-12-05	23,009,746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수 대폭 증가에 따른 명절위문금 및 월동대책비 지원비 증가 ※기초생계·의료수급자수:’ 18.12월159,420가구→ 19.10월165,613가구(3 .9%증가)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0		99.9%	
3	복지정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	153,301		2019-08-19	1,286,64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2019년 유급병가제가 신설되어 현장 대체인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53,301		100.0%	

연번	과목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 예산집행상황 (금액,%)	변경사유
	과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수요 증가로 예산 부족이 발생하였고, 확정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시비매칭 부분을 보완하고자 예산을 변경함
4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70,000		2019-02-13	169,072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체계 구축사업 분야 중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사업 추가로 과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예산 추가 확보 필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품질관리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70,000		56.4%	
5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2019-02-13	124,245	사회서비스원 본부 리모델링 비용 부족분 확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시설비		40,000		88.7%	
6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기타자본이전	2,700		2019-03-19	2,508	사회서비스원 본부 리모델링공사 감리비 확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감리비		2,700		92.9%	
7	지역돌봄복지과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시설비	98,543		2019-12-06	0	체계적인 공사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에 따라 당초 편성된 '19년 감리비 예산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감리비		98,543		0.0%	

연번	과목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 예산집행상황 (금액,%)	변경사유
	과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8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11,574		2019-09-25	1,319,078	시립시설 기능보강 및 공기청정기 추가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비		311,574		87.0%	
9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비	28,160		2019-09-25	514,817	구립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		28,160		32.4%	
10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비	174,776		2019-09-25	751,613	법인·개인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을 위해 예산과목 변경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 전재원)		174,776		18.0%	
11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시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500		2019-10-23	8,451,000	보건복지부에서 추가교부된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분 편성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종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500		100.0%	
12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사회관계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		2019-03-14	30,000	'19년도 예산 확정 후 국고보조금이 신규 교부되어 이에 따른 시비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		100.0%	

연번	과목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 예산집행상황 (금액,%)	변경사유
	과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강화-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부담금 확보
13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8,224		2019-09-16	1,282,362	'19년 이야기 할머니 활동횟수('18년 405명 78회 →'19년 405명 85회) 및 지방비 부담률(국비 80% →70%) 증가에 따라 문화체육부 확장내시 기준 시비 부족분에 대해 추가소요 예산 변경사용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문화체육관광 부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8,224		100%	
14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94,627		2019-06-27	2,873,081	'19년 사회공헌 일자리 수요증가('18년 1,005명 →'19년 2,012명)에 따라 고용노동부 확정내시 기준으로 시비 부족분에 대해 추가소요 예산 변경 사용 고용노동부 확정내시(2,012명 3,114백만원)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고용노동부 공모)	사회복지사업보조		594,627		92.3%	
15	인생이모작지원과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민간위탁사업비	577,332		2019-02-27	3,660,736	노인종합복지관 가능보강사업 중 건축허가(신고) 대상 증축 및 1억원 이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시설비		577,332		72.4%	

연번	과목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 예산집행상황 (금액,%)	변경사유
	과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확충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 공사를 직접 발주하는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변경
16	인생이모작지원과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민간위탁사업비	159,062		2019-03-25	3,660,736	서울노인복지센터 내진성능보강공사 물량 증가에따른설계변경시행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시설비		159,062		72.4%	
17	인생이모작지원과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민간위탁사업비	1,268,000		2019-07-11	3,660,736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 건축허가 대상 증축 및 1억원 이상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발주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변경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시설비		1,268,000		72.40%	
18	인생이모작지원과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민간위탁사업비	429,163		2019-05-16	3,660,736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 건축허가 대상 증축 및 1억원 이상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 직접 발주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변경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시설비		429,163		72.4%	

연번	과목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 예산집행상황 (금액,%)	변경사유
	과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9	인생이모작지원과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70,000		2019-09-16	2,936,956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립종합노인복지관에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를 긴급하게 설치하고, 또한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력 단련실 기구를 교체하고자 변경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민간위탁사업비		70,000		98.0%	
20	인생이모작지원과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361,000		2019-11-26	2,936,956	돌봄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적용으로 시민들에게 소통하고자 시립노인종합복지관 간판을 돌봄 통합브랜드(서울케어)로 교체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립종합노인복지관에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를 긴급하게 설치하고자 변경 사용 또한, 시립도봉노인종합복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민간위탁사업비		361,000		98.8%	

연번	과목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 예산집행상황 (금액,%)	변경사유
	과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지관온수탱크고장에따른안 전사고예방및동절기이용어 르신의서비스수준향상을위 하여변경사용
2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25,000		2019-12-18	1,005,173	타 거주시설 총사가 평균 인건비보다 낮게 책정되어 인건비 부족 발생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5,000		98.9%	
2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88,000		2019-12-18	9,891,027	타 거주시설 총사가 평균 인건비보다 낮게 책정되어 인건비 부족 발생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88,000		99.9%	
2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120,000		2019-01-16	1,005,173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어야 하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통계목 오류 편성됨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20,000		98.9%	
2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24,000		2019-12-20	9,891,027	타 거주시설 총사가 평균 인건비보다 낮게 책정되어 인건비 부족 발생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24,000		99.9%	
2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무관리비	20,000		2019-10-21	75,210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수당, 탈시설협치사업 예산 추가소요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20,000		92.1%	

연번	과목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 예산집행상황 (금액,%)	변경사유
	과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예산변경
26	장애인복지정책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20		2019-10-14	25,050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매칭 시비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20		100.0%	
27	장애인복지정책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68,000		2019-03-06	268,000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경에 따라 지역센터에 사업비 직접교부로 변경됨에 따른 예산변경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268,000		100.0%	
28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금	260,000		2019-04-03	260,000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지원 세부사업 분리에 따른 예산변경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260,000		100.0%	
2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 전재원)	239,496		2019-05-14	233,218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 예산 세부사업 분리에 따른 예산변경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 전재원)		239,496		97.4%	
30	장애인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9,960		2019-12-03	680,499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국비 및 가산급여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분담예산확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9,960		49.6%	
31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0,000		2019-11-29	14,192,739	서울형장애인부가급여 12월 실소요액 파악결과

연번	과목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 예산집행상황 (금액,%)	변경사유
	과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50,000		99.5%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
32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46,000		2019-09-26	746,000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집수리)사업 추가 지원 물량 발생에 따른 예산확보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46,000		100.0%	
33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15,800		2019-10-24	1,025,200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신규시행(2019.9.2.)에 따른 시비 분담 예산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15,800		67.6%	
34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시설비	29,125		2019-09-19	57,625	잡은 강우로 인한 방수공사가 지연되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비 부족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감리비		29,125		100.0%	
35	자활지원과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41,372		2019-07-19	105,260	따스한 채움터 부지사용료가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른 예산확보
		거리노숙인 보호	사무관리비		41,372		100%	
36	자활지원과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5,000		2019-12-11	1,582,433	동자동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공사 보수보강비 및 불법증축물 철거비 증가,공사장 안전사고
		쪽방거주자	시설비		95,000		51.7%	

연번	과목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 예산집행상황 (금액, %)	변경사유
	과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재발방지대책(행정2부시 장 방침)으로 비상주 감리용역을 상주의무화 함에 따라 예산 확보가 필요함 사전협의절차이행등으로인 한사업기간확보를위해202 0년사고이월함
37	자활지원과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12,000		2019-12-11	0	동자동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공사 보수보강비 및 불법증축물 철거비 증가,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행정2부시 장 방침)으로 비상주 감리용역을 상주의무화 함에 따라 예산 확보가 필요함 사전협의절차이행등으로인 한사업기간확보를위해202 0년사고이월함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감리비		212,000		0%	
38	자활지원과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		2019-12-11	0	동자동쪽방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공사 보수보강비 및 불법증축물 철거비

연번	과목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 예산집행상황 (금액,%)	변경사유
	과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시설부대비		3,000		0%	증가.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행정2부시 장 방침)으로 비상주 감리용역을 상주의무화 함에 따라 예산 확보가 필요함 사전협의절차이행등으로인 한사업기간확보를위해202 0년사고이월함
39	자활지원과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27,300		2019-11-22	638,058	노숙인 시설 공기청정기 보급관련 국비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매칭 시비는 전액 사용하였으나, 미매칭 국비 불용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비		27,300		93.8%	
40	자활지원과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민간자본사업보조(자 체재원)	9,600		2019-11-22	24,000	노숙인 시설 공기청정기 보급관련 국비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매칭 시비는 전액 사용하였으나, 미매칭 국비 불용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이 전재원)		9,600		45.3%	
41	자활지원과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2,400		2019-12-16	24,000	노숙인 시설 공기청정기 보급관련 국비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매칭 시비는 전액 사용하였으나, 미매칭 국비 불용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400		45.3%	
42	자활지원과	자활장려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3,981		2019-10-31	7,420,727	· '19년 8월 복지부에서

연번	과목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 예산집행상황 (금액,%)	변경사유
	과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3,981		99.6%	일자리 확대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별 종사자(44명) 추가채용 국비예산 교부 ·복지부주관전체지역자활 센터대상5개월분렌탈비지 원(1개소당3대,32천원) ·'19년도성과우수지역자 활센터(6개소)선정으로인 센터브지급을위한국가보조 금추가교부
43	자활지원과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158		2019-11-18	83,450,965	· '19년 8월 복지부에서 일자리 확대추진을 위해 추경예산(국비7,062,64 3천원)을 교부하여 매칭시비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자활근로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158		98.1%	
44	자활지원과	창년희망키움통장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9,344		2019-11-18	83,450,965	· '19년 8월 복지부에서 일자리 확대추진을 위해 추경예산(국비7,062,64 3천원)을 교부하여 매칭시비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자활근로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9,344		98.1%	

연번	과목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 예산집행상황 (금액, %)	변경사유
	과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45	자활지원과	자활장려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7,324		2019-11-18	83,450,965	· '19년 8월 복지부에서 일자리 확대추진을 위해 추경예산(국비7,062,64 3천원)을 교부하여 매칭시비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자활근로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7,324		98.1%	
46	자활지원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3,144		2019-11-18	2,589,684	18년대비 19년 유지가구 및 신규가입 증가로 사업비 부족예상 불용예정인 청년희망키움통장 국비조정 및 시비매칭조정
		희망키움통장 I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3,144		100%	
47	자활지원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4,723		2019-12-06	2,589,684	18년대비 19년 유지가구 및 신규가입 증가로 사업비 부족예상 불용예정인 청년희망키움통장 국비조정 및 시비매칭조정
		희망키움통장 I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4,723		100%	
48	자활지원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283		2019-11-18	675,055	18년대비 19년 유지가구 및 신규가입 증가로 사업비 부족예상 불용예정인 청년희망키움통장 국비조정 및 시비매칭조정
		내일키움통장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283		99.9%	

연번	과목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변경후 예산집행상황 (금액,%)	변경사유
	과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49	자활지원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4,882		2019-12-06	675,055	18년대비 19년 유지가구 및 신규가입 증가로 사업비 부족예상 불용예정인 청년희망키움통장 국비조정 및 시비매칭조정
		내일키움통장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4,882		99.9%	
50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업	민간위탁금	1,300,000		2019-09-23	15,072,012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확보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00,000		100.0%	
51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업	민간위탁금	810,000		2019-12-06	15,072,012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보장구 등 요양비 지원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으로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현금 급여) 부족에 따라 소요될 추가 필요 예산을 민간위탁금(현물급여)에서 일부 변경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10,000		100.0%	

③ 예산의 이체

○ 예산이체는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직무권한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을 상호 이체하는 것으로 금번 결산안에는 총 18건, 1조 4,695억 3천 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19년도 복지정책실의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복지정책과와 지역돌봄복지과에서 예산 상호이체가 일어난 것임.

<표> 2019 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

(단위: 천원)

연번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유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복지 정책과	저소득시민 부가급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2,725,900		22,725,900	19-01-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지역돌봄 복지과	저소득시민 부가급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2,725,900			
2	복지 정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10,000		10,000	19-01-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지역돌봄 복지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10,000			
3	복지 정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	18,844,056		18,844,056	19-01-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지역돌봄 복지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사회보장적 수혜금		18,844,056			
4	복지 정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공기관등에대 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30,000		330,000	19-01-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연번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유
	조직	세부 사업	동계목		감액	증액		
	지역돌봄 복지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공기관등에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330,000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5	복지 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31,726,000		31,726,000	19-01-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지역돌봄 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31,726,000			
6	복지 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자치단체 정상보조금	661,826,000		661,826,000	19-01-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지역돌봄 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자치단체 정상보조금		661,826,000			
7	복지 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820		600,820	19-01-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지역돌봄 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820			

연번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유
	조직	세부 사업	동계목		감액	증액		
8	복지 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793,932		4,793,932	19-01-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지역돌봄 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793,932			
9	복지 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8,171,997		8,171,997	19-01-1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지역돌봄 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8,171,997			
10	복지 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 계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625,578,448		625,578,448	19-01-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지역돌봄 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 계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625,578,448			
11	지역돌봄 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무관리비	39,000		39,000	19-01-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복지 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무관리비		39,000			

연번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유
	조직	세부 사업	동계목		감액	증액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12	지역돌봄 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 비	118,167		118,167	19-01-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복지 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민간위탁사업 비		118,167			
13	지역돌봄 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 보조	3,731,541		3,731,541	19-01-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복지 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 보조		3,731,541			
14	지역돌봄 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33,200		33,200	19-01-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복지 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33,200			
15	지역돌봄 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	40,000		40,000	19-01-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복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경상사업		40,000			

연번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유
	조직	세부 사업	동계목		감액	증액		
	정책과	운영	보조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16	지역돌봄 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1,120,600		1,120,600	19-01-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복지 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1,120,600			
17	지역돌봄 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89,843,137		89,843,137	19-01-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복지 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89,843,137			
18	지역돌봄 복지과	홀몸어르신의 행복, 노래로 찾아요-노마 합창단 운영(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4,000		4,000	19-01-1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019.1.1.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 반영
	복지 정책과	홀몸어르신의 행복, 노래로 찾아요-노마 합창단 운영(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4,000			

3) 사업별 검토의견

(1) 불용액 과다사업 점검

- 불용액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불용액이 빈발할 경우에는 다음해 예산편성 시 삭감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기에 서둘러 사업을 발주하고, 미집행잔액은 이월하는 등 예산집행에 건전하지 못한 사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겠음.
-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이러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의 축소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복지정책실의 20%이상 불용 사업은 총 15개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정책실 2019년 20%이상 불용사업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최종 예산	예산현액	불용액 (계)	불용률
1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143,120	143,120	143,120	49,104	34.3%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9,184,056	19,184,056	18,730,755	4,925,713	26.2%
3		기본경비	371,698	371,698	371,698	138,065	37.1%
4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5,732,832	7,105,591	7,278,011	3,685,311	50.6%
5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170,000	170,000	170,000	43,994	25.8%
6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3,795,826	5,854,826	5,854,826	1,591,180	27.1%
7	인생	50+캠퍼스 확충	-	-	3,526,359	2,573,010	72.9%

연 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최종 예산	예산현액	불용액 (계)	불용 률
	이모작 지원과						
8	장애인 복지 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4,721,586	4,843,386	4,843,386	1,133,189	23.3%
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420,000	420,000	420,000	152,000	36.1%
10		장애인 전동 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시민참여)	375,000	375,000	375,000	375,000	100.0%
11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960,124	1,120,499	1,120,499	240,560	21.4%
12	장애인 자립지 원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234,000	234,000	234,000	53,456	22.8%
13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	334,880	334,880	334,880	93,583	27.9%
14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	512,600	1,528,400	503,200	32.9%
15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4,902,852	6,112,413	6,215,027	1,291,536	20.7%

- 특히,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집행노력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의 사장 방지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필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 심사시 그 원인(예산절감, 사업실패, 부적절한 예산운용 등)을 분석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하는 등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심사가 필요함.
- '19년도 집행부의 예산사업 중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복지정책실 '19년도 불용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불용률 20%이상인 사업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 금 제외)	불용률 (%)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1	서울형 근영 기초보장제도	18,730,755	13,805,042	0	4,925,713	2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추세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역할은 축소(대상자 감소 등) ○ 향후대책: 대상자 변동 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예산 편성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합리적 보완모델 마련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 금 제외)	불용률 (%)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2	기본경비	371,698	233,633	0	138,065	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국내 출장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불용 발생 ○ 향후대책: 20년 본예산 편성시 예산감액편성
3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7,278,011	2,595,340	945,000	3,685,311	5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전담형 시설전환(증개축) 사업 신청 저조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매칭시비 집행잔액 발생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 금 제외)	불용률 (%)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4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5,854,826	4,263,646	0	1,591,180	2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 요양보호사 독감예방 접종 : '19년 최초도입 사업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신청 저조 및 요양보호사만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인 사회복지사, 간호사는 비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수행 - 취약계층 요양보호사 무료 직업훈련 지원사업비로 교육신청 저조에 따른 예산 불용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 금 제외)	불용률 (%)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5	50+캠퍼스 확충	3,526,359	953,349	0	2,573,010	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동부캠퍼스 사유지 매입건으로 토지소유자(6필지)들과 매매협의(대면 등 4회) 진행하였으나, 매입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 결렬되어 불용 ○ 향후대책: 사유지 6필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추진 중으로서, 추후 토지소유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공사추진예정
6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4,843,386	3,710,197	0	1,133,189	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폐쇄예정이던 거주시설의 시기지연에 따른 입주수요 감소로 신규주택 확보비용 및 운영비 불용 ○ 향후대책: 보다 면밀한 탈시설수요자 파악으로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 금 제외)	불용률 (%)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주택 확보 비용 및 운영비 절감
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420,000	268,000	0	152,000	36.2%	○ 불용사유 : 복지부 확정내시액이 국비기준 종전 210백만원에서 134백만원으로 감액되어 국비매칭 예산 76백만원 불용(국비:시비=50:50) ○ 향후대책: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불용 최소화
8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시민참여)	375,000	0	0	375,000	100.0%	○ 불용사유 : 동일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국비 예산(572,000천원)이 확보되어 국비로 사업 추진 ○ 향후대책: 국비사업과 동일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이 책정될시 예산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추경 추진하도록 하겠음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 금 제외)	불용률 (%)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9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1,120,499	805,364	0	240,560	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지역맞춤형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 재공모(4차)에도 기관 신청 저조 및 중도포기 기관 발생 (동료지원가 25명 계획, 15명 운영) ○ 향후대책: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불용 최소화
10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1,528,400	1,025,200	0	503,200	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보건복지부 감액내시에 따라 시비매칭분 불용 ○ 향후대책: 서울시자치구별 방과후활동서비스수요(만12~18세 미만발달장애 학생)를 파악하고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 금 제외)	불용률 (%)	불용사유 및 향후대책
							,가외성수요를 최소화하여 불용액 발생 방지
11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6,215,027	4,768,404	155,087	1,291,536	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용사유 : (시설비)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완료 및 준공 정산되어 공사비 불용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위탁사업비, 자 치단체자본보조) 시립·구립·법인장애인복지관 개보수 및 장비보강, 스프링클러설치, 공기청정기 지원집행잔액 및 구립,법인복지관 중구비 및 자부담 안된 곳 불용 ○ 향후대책: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집행 잔액 최소화

① 서울형 기초보장 사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은 서울시의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됨. 중앙정부의 법정지원 기준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과 이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급여 지급 금액을 현실화한 제도라 할 수 있음.¹¹⁾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평가액과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산출한 소득인정액 단일기준으로 수급자의 재정상황을 판단하는 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중앙정부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수급권자 선정기준 (2020년 기준)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그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11) 김승연 외(2018),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개편방안, 서울연구원.

○ '20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단위 : 원)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694,858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2020년 기준) `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단위 : 원)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3%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5	2,491,942	2,797,738

○ 재산기준 :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0백만원 이하, 자동차기준 적합)

○ 부양의무자 기준 : 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6억원 이하) 동시 충족

○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 추세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가 감소하는 것을 들고 있음.

○ 그러나 최근 3년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의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17~'18년도에 비해 '19년도 사업에서 불용률이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최근 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운영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보조금반납금제외)	불용률
2019	18,730,755	13,805,042	0	4,925,713	26.3%
2018	16,463,200	16,105,604		357,596	2.2%
2017	13,259,520	13,122,206	0	137,314	1.04%

○ 2013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연도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자의 증감추이는 다음과 같음.



[그림] 연도별 서울형 기초수급자 및 국민기초수급자 증감추이 (단위: %)

- 기본적으로 법정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다르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개인의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자체적인 권한이 없음.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을 병행신청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정보를 활용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대상이 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탈락가구이거나 수급중지가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의 특성상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기초수급자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는 어느 한 쪽이 증가하면 반대쪽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게 됨.
-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다음 그림과 같이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 '18년도에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그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출처:e-나라지표)¹²⁾

1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

○ '19년도 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한 바 있음.

- '19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특성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 지원을 확대 실시하게 됨. 이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¹³⁾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구조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이 완화되면 사업 대상인원이 줄어드는 측면을 보이는 특성은 고려해야 하나, 2019년도 불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완화된 점을 충분히 반영해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9년도 기초생활수급 가구특성별, 급여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 적용여부 >

구분	가구특성		적용급여		시행시기
	수급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사례1	일반가구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적용	적용	'19.1~
사례2	일반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	적용	미적용	'19.1~ *의료급여 ('22.1~)
사례3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13) 사례4	30세미만 시설퇴소 (보호종료) 아동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출처 : 보건복지부)

②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방지 및 편의 시설 보완으로 시설의 안전보강, 이용불편 해소 및 낡은 장비교체, 부족한 재활장비 구입으로 재활프로그램의 활성화, 장애인 자립·재활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임.
- 2019년 예산액은 61억 1,24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261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62억 1,502만원이며, 이 중 47억 6,84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50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후 12억 9,153만원을 불용하였음.
- 통계목 별로 구분해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된 법인에서 설치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의 개보수 및 장비 보강 예산 23억 5,200만원, 시립장애인복지관의 개보수 및 장비보강 예산 21억 8,123만원, 구립 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보강 예산 6,960만원 등임.
- 또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관련 시설비 및 감리비 예산 6억 4,784만원,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관 3억 1,752만원, 시립장애인복지관 1억 3,620만원, 구립 장애인복지관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예산 1억 8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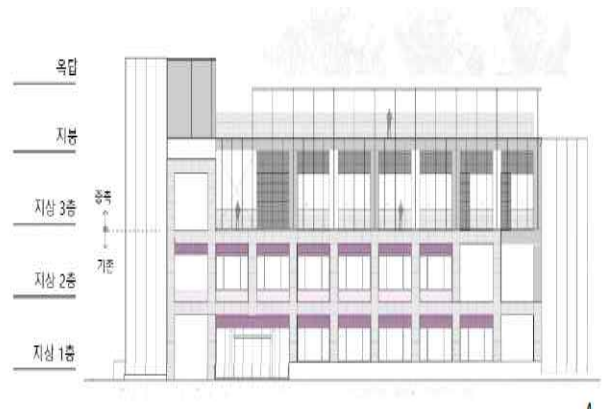
통계목	2019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 등	여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4,902,852	1,209,561	102,614			6,215,027	4,768,404	155,087	1,291,536
시설비	0	619,341		-29,125		590,216	244,954		345,262
감리비	0	28,500		29,125		57,625	57,625		0
민간자본 사업보조	2,652,005	317,520	102,614			3,072,139	2,452,539	155,087	464,513
민간위탁 사업비	2,181,239	136,200				2,317,439	1,897,478		419,961
자치단체 자본보조	69,608	108,000				177,608	115,808		61,800

나. 연례적인 추경편성 및 예산 불용 반복 개선 필요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전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편성되는 만큼, 대부분의 사업은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액의 낙찰 차액의 발생 등으로 불용되는 예산 외에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흡한 준비로 인해 매해 사고 또는 명시 이월 되거나 큰 금액을 불용하고 있음.
-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사업은 이용인원 증가로 인한 공간 협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증축(1개층)을 통한 프로그램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자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8천만원, 공사기간은 32개월임.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 개요>

- 위치 :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2(상계동)
- 기간 : '16.12 ~ '19.7(32개월)
- 법인 : (사단)한국지체장애인협회
- 기존시설: 대지 2,582㎡, 연면적 3,159.66㎡
- 공사규모: 증 1,309.70㎡ (총 4,469.36㎡)
 - 지하1층 및 지상1층 면적 증가, 지상3층 증축
- 사업비: 3,996백만원(시비)



○ 이 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 당시부터 추진 방향에 대한 설계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면서 2015년 8월 최초 증축 추진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2017년 7월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9월 설계변경¹⁴⁾이 이루어지면서 최종 준공일도 지연되었음. ((변경전) 2019.5.27. → (변경후) 2019.7.15.)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사업 추진 경과>

- | | |
|--------------------------------|----------|
| □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추진 계획 수립 | '15. 8월 |
| □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의뢰(도기본) | '16. 9월 |
| □ 북부장애인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7. 5월 |
| ※설계이후 공사비 증액요구 및 검토('17.6~8) | |
| □ 북부장애인복지관 사업비 증액 및 변경계획 수립 | '17. 7월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가결) | '17. 12월 |
| □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도기본) | '18. 5월 |
| □ 추경 편성(1억원) 및 설계변경 | '18. 9월 |
|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변경(2019.7.15.) | '19. 3월 |
| □ 준공 | '19. 7월 |

14)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관련 설계 변경내용>

- 엘리베이터 위치변경 및 구조보강공법 변경
- 3층 증축공사 레이아웃 및 추가 공사요청
(지하 1층 대강당 리모델링, 체력 단련실 인테리어 공사, 직업재활시설 닥트 이설공사)
- 자재 규격 및 단가 변동분 반영(철골, 우레탄, 골재, 복합판넬 등)
 ※설계변경 이후 추가 공사비 및 물가상승률 등 자연상승률 반영

- 또한 2019년도 예산의 경우 증축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5,900만원, 공사비 추가 발생에 따른 예산 6억 4,800만원을 등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만 편성하였는데.
- 서울시는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8)¹⁵⁾」에 따라 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5%이상 증가 시 위탁금 편성을 위해 사전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준공일 미확정을 사유로 민간위탁금 계약심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이와 함께 시설비와 감리비도 준공일 확정 이후 추경을 통해 편성하도록 하라는 예산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힌바 있음.
-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예산 내역은 설계 변경에 따른 증축 공사 실정보고 중 변경 계약 미포함분과 실정보고 제출 예정 분, 건설 폐기물처리용역 변경 예정액 등과 관련한 시설비 61,934만원, 준공연장에 따른 감리비 2,850만원 등 총 64,784만원 등 이었음.

1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기획담당관(2018)」 30P

○ 민간위탁 계약심사(사업비 심사)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옹역위탁심사팀)
- 심사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 심사시기 :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체결 전
- 위탁금이 전년도 편성액 대비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계약심사 대상임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으로 심사 가능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추가 심사가 가능)
- ※ 사업계획 미확정 등으로 계약심사가 어려운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위탁비용을 지급하기 전까지 심사 가능

<표> 북부장애인복지관 2019년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금회증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계	20,159,000	806,840	20,965,840	
민 간 위 탁 금	20,159,000	159,000	20,318,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16,573,000*4 =66,292천원 ◦ 운영비 : 92,543천원
시 설 비	0	619,340	619,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증축공사 실정보고 중 변경계약 미포함분 230,194 ◦ 2019년 증축공사 실정보고 제출분 : 45,770 ◦ 2019년 증축공사 실정보고 제출 예정분 : 329,516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변경 예정액 : 13,862
감 리 비	0	28,500	28,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액(당초보다 49일 준공연장)

○ 한편, 북부장애인복지관 관련 결산자료에 따르면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 6억 4,784만원 중 감리비 과소 편성으로 인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 사용한 2,92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의 47%인 3억 4,526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 북부장애인복지관사업 예산 불용사유

(단위:천원)

통계목	변경금액		전용	불용액	불용사유
	본예산	추경예산			
계		647,841		345,262	
시설비	0	619,341	△ 29,125	345,262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 완료 및 준공 정산되어 공사비 불용
감리비	0	28,500	29,125	0	

<표> 북부장애인복지관사업 예산의 변경사용

(단위: 천원)

통계목	변경금액		변경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시설비	29,125		2019-09-19	잦은 강우로 인한 방수 공사가 지연 되어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비 부족
감리비		29,125		

- 이는 부정확한 추계로 인한 예산 이·전용, 연례적인 추경편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증축사업의 특성상 사업추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용역계획을 준비하고, 연초에 확정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③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시민참여예산)
-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은 2018년 시민참여예산 (시정참여형16))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외출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내용임.
 - 구체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급속충전기 170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3억 7천5백만원이 편성

16) 2019년 시민 참여 예산제 운영계획(2018년 선정)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심사 주체
실 적	시정 참여형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었음.

<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시민참여) >

- 사업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 사업규모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170대 설치(대당 단가 2,200천원)
- 사업내용 :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
- 예산액 : 375백만원

<표>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천원)

예산과목(통계목)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률
계	(x-) 370,500	(x-) 0	0	100.0%
자치단체자본보조	(x-) 370,500	(x-) 0	0	

○ 동 사업은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자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2018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예산편성되었음.



출처 : '2018년 시정협치형 사업 운영계획' 재구성 , 서울혁신기획관

[그림] 2018년 시민참여예산(시정참여형) 추진절차

- 한편 2018년 8월 보건복지부는 전동휠체어 등과 같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생활형 SOC사업의 하나로 「전동보장구 충전기 확충사업」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현황 및 수요 파악을 요청하였으며¹⁷⁾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2018년 12월 11일 2019년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 확정내시를 통보¹⁸⁾하였음.

17)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 현황 및 수요 파악'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4524(2018.8.29.)

18) '2019년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확정내시 통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264(2018.12.11.)

- 보조사업명 :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 기준보조율 : 국비 100%
- 서울시 내역

시·도명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1542-310)					
	사업량(명)	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금	자부담기타
서울	232	510,400	510,400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 개요>

- 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기간 : 2019. 1. 1.~ 12. 31.(단년도 사업)
- 사업내용 : 충전 수요에 따른 장소 선정 및 충전기 설치
- 설치장소 : 전국 2,000여개 대상시설
 - * 행정청사, 역사, 터미널,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 예산액 : 44억(* 2,200천원(기준단가) × 2,000개소(물량))
 - * 2,200천원(기준단가) × 2,000개소(물량)

출처 :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과는 기 편성 된 시민참여 예산사업과 동일 내용의 국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자 시민 참여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내용의 ‘시민참여예산 전액 감액 요청서’(붙임1)를 예산과에 제출(2018.12.12.)하였으나, 예산담당관은 “계수조정기간 도과에 따라 집행부 차원의 감액은 힘든 상황이며, 시민참여예산 집행 곤란 시 불용처리 하도록” 부서의 감액 요청을 불수용하여 예산 전액이 확정, 편성되었음.

<표> 시민참여예산 복지부지원 사업비교

구분		시민참여예산	보건복지부지원
공통	사업내용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범위	서울시 전체 행정청사, 역사, 터미널,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상이	재원	시비 100%	국비 100%
	예산	3억7천5백만원	5억7천2백만원
	지원대수	170대	260대

출처: 서울시,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재구성

- 이후 집행부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2019년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¹⁹⁾ 시민참여예산 전액을 감추경 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19년 6월 제287회 정례회(2019.6.1.0.~6.28.)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는 추경안 제출시기를 놓쳐 감추경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있음.
- 집행부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²⁰⁾을 통하여 이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추가 재원 필요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통해 사업추진의 완성도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착오로 인하여 기 편성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또한, 국비 지원 사업 물량이 시민참여예산 사업 물량 이상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적으로 집행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19) 2019년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 추진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7932(2019.4.16.)

4. 예산조치계획

□ 시민참여예산 전액 감추경

• 예산액 : 375,000천원(시비)

• 사유 : 국비예산(보건복지부)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사업비가 572,000천원 확보되었기에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중복이 된 시민참여예산(시비)은 전액 감추경하여 시비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

20)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2) 예산 불용 반복 사업

①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사업

-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사업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 현액 218억 9천 1백만원(전년도 이월액 71억 8천 1백만원)중 67억 1천 1백만원을 집행하고 149억 1천 5백만원을 이월하여 실집행률 30.7%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
- 최근 3년간 결산을 통해 살펴보면 2017년 실집행율 42.7%, 2018년 57.5%, 2019년 30.7%로 나타나 2017년부터 사업수행실적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집행부는 사업실적 저조의 원인으로 어르신 복지시설의 건립반대 민원 및 과업추가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동대문구, 마포구)으로 밝히고 있으나 매해 차년도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는 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며, 2020년으로 이월된 149억 1천 5백만원의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표>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사업 3개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실집행율
2017	(x-) 13,506	(x-) 55	(x-) 0	(x-) 13,562	(x-) 5,788	(x-) 2,053	(x-) 5,720	42.68
2018	(x6,347) 15,964	(x-) 2,053	(x-) 0	(x6,347) 18,017	(x2,345) 10,366	(x4,001) 7,181	(x-) 470	57.53
2019	(x-) 14,710	(x-) 7,181	(x-) 0	(x-) 21,891	(x-) 6,711	(x-) 14,915	(x-) 265	30.66

(3) 사업설계의 부적절성

가.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이전·건립 사업

-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사업은 '14년 발표한 행복 4구플랜 및 동북 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를 중랑물재생센터(성동구)로 이전·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임.

서울광역푸드뱅크 사업개요

- 시설명 :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사회복지시설)
- 구분 : 시립시설
- 운영기관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위탁기간 : '17.10.1~'20.9.30)
- 역할
 - 대량기부물품의 수령·보관·검수 및 25개 자치구 푸드뱅크·마켓 배분
 - 긴급지원물품 보유 (응급구호식품, 기부실적이 저조한 시기의 대체 지원품)
 -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용자 변동에 따른 적정 할당량 배분
 - 푸드뱅크 사업소 기능 수행(홍보, 기부처 발굴, 배분관리 등)

- 현재 본 사업은 지역돌봄복지과의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사업 가운데 서울광역푸드뱅크의 이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전체 사업예산 가운데 공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서울광역푸드뱅크 이전을 위한 예산에 해당함. 집행부에서는 '18년도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7천 9백만원을 추가 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고, '19년도 본예산으로 해당사업 소요비용으로 18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년도 본예산으로 7억 3,421만원을 편성함.

<표>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사업 전체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계	(x-) 2,256,530	(x-) 2,336,434	(x-) 4,705,936	(x-) 3,362,803
사무관리비	(x-) 0	(x-) 0	(x-) 120,230	(x-) 180,23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x-) 2,700	(x-) 2,700	(x-) 2,700	(x-) 2,700
연구용역비	(x-) 0	(x-) 0	(x-) 20,000	(x-) 0
민간위탁금	(x-) 532,877	(x-) 532,877	(x-) 579,109	(x-) 585,389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1,676,453	(x-) 1,676,453	(x-) 1,731,978	(x-) 1,780,674
시설비	(x-) 0	(x-) 79,904	(x-) 1,866,018	(x-) 724,198
감리비	(x-) 0	(x-) 0	(x-) 18,081	(x-) 8,311
시설부대비	(x-) 0	(x-) 0	(x-) 6,820	(x-) 1,701
민간위탁사업비	(x-) 0	(x-) 0	(x-) 0	(x-) 2,400
자치단체 자본보조	(x-) 44,500	(x-) 44,500	(x-) 361,000	(x-) 77,200

<표> 서울광역푸드뱅크 센터 이전 관련 총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내 용
합 계	2,705,033	
2020년도	734,210	공사비, 감리비 등 증가분 등
2019년도	1,890,919	공사비, 감리비 및 부대비 등 ※입찰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여 사고 이월 최소화 및 명시이월로 불용 최소화
2018년도	79,904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서울광역푸드뱅크 건축개요

- 규 모 : 지상 2층, 연면적 980.5 m^2
- 위 치 : 성동구 송정동 74-7(중랑물재생센터 내)
- 주요시설 : 물류창고(646 m^2), 사무실(126 m^2), 교육장(100 m^2) 등
- 공사기간 : '19. 12월 ~ '20. 9월(예정)
- 사업비 : 2,705,033천원
 - '18년 추 경 : 79,904천원(설계비 및 설계공모 보상비)
 - '19년 본예산 : 1,890,919천원(공사비, 감리비 및 부대비)
 - '20년 본예산 : 734,210천원(공사비, 감리비 등 증가분)
- 건축허가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용도: 창고시설), 경량철골구조

- 해당 사업은 '1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과 '19년도에 편성된 본 예산에서 각각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8년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의 사고이월 사유는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이 각각 12월 4일과 12월 11일에 완료되어, 설계용역 준공 후 대가 지급을 위해 이월시킨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9년도 본예산 사고이월의 사유는 사업 실시 과정에서 현장여건 반영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되어 사전절차의 이행이 필요하게 되면서 사업이 중지되면서 '19년 감리계약 및 공사계약 체결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된 것임.
 -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반조사 결과 전기, 수도 등 간설설비 인입 구간이 연장되었고,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조체 물량 증가 및 지내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 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 또한 이 과정에서 당초 총 사업비 40억 미만으로 생략된 사전절차(투자심사, 재산관리계획) 이행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재정관리담당관), 공유재산관리계획(자산관리과)가 추진되어야 했음.
- 공사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예산의 편성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전절차 등의 과정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사업 준비를 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문제였을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집행부에서는 '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역푸드뱅크센터사업의 광역센터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를 상정한 바 있으며, 당시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시기의 적절성, 예산집행 가능성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음.
 - 당시 집행부에서는 '18년도에 설계용역을 진행해 '19년도에는 착공을 하겠다는 것을 사유로 '18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7천 9백만원 가운데 6천 7백만원을 '19년도로 사고이월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18년도 예산 사고이월 및 집행 현황

(단위: 원)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2018년→2019년 사고이월	79,904,000	67,202,000	67,202,000	12,702,000 (낙찰차액)
2019년 편성액	1,958,121,000	80,172,000	1,877,943,050	5,950

- 본 사업은 최초 설계비 용역 편성과정부터 집행부의 성급한 예산 편성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실제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최종완공까지 1년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남.
- 건축 관련 예산의 경우 사업진행과정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하기 쉬운 측면이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건축 관련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예산편성과정과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기금 운영 관련

1) 기금운용 결산 총괄 및 기금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

- 2019 회계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3,278억 8천 8백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3,267억 7천 9백만원)보다 11억 9백만원 증가한 것으로써 2개 기금(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4개 계정(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구호계정)이 운용되었음.

<표> 2019년도 복지정책실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19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계	326,778	1,110	10,548	9,438	327,888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3,436	△418	403	821	13,018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5,682	△297	2,171	2,468	25,385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7,902	88	859	771	7,99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79,758	1,737	7,115	5,378	281,495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19	2018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①	전년도이월금		-		
	예치금잔액	1,436	997	439	
	예탁금잔액	12,000	13,000	△1,000	
운용수입	합계	1,839	2,292	△453	
당해 연도 조성 ②	소 계	403	295	108	
	전입금	-	-	-	
	보조금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예수금	-	-	-	
	이자수입	303	233	70	예탁금 금리 상향
	기타수입	100	62	38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액 증가
	예탁금원금회수	-	1,000	△1,000	
예치금회수	1,436	997	439		
운용지출	합계	1,839	2,292	△453	
당해 연도 사용 ③	소 계	821	856	△35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	745	755	△10	어르신 주거지원 사업 신청 저조 등
	융자성사업비	75	100	△25	어르신알자리사업장 임대 자금 융자지원 신청저조
	기본경비	1	1	-	
	차입금원리금상환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기타지출	-	-	-	
	예탁금	-	-	-	
예치금	1,018	1,436	△418		
당해연도 현재액 ①+②-③	조성현재액	13,018	13,436	△418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1,018	1,436	△418	
	예탁금	12,000	12,000	-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19	2018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①	전년도이월금	25,682	24,588	1,094	
	예치금잔액	11,282	10,188	1,094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예탁금잔액	14,400	14,400	-	
운용수입	합계	13,453	13,476	△23	
당해 연도 조성 ②	소 계	2,171	3,288	△1,117	
	전입금				
	보조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1,630	2,862	△1,232	입주기간 연 장에 따른 반 납 미도래 (기본2년, 최 장6년)
	예수금				
	이자수입	541	426	115	
	기타수입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282	10,188	1,094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운용지출	합계	13,453	13,476	△23	
당해 연도 사용 ③	소 계	2,469	2,194	275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	698	673	25	집행잔액 변동
	용자성사업비	1,750	1,500	250	전세주택 수 요변동
	기본경비	21	21	-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예탁금				
	예치금	10,984	11,282	△298	
당해연도 현재액 ①+②-③	조성현재액	25,384	25,682	△298	사 업 추 진 에 따른 감소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10,984	11,282	△298	사 업 추 진 에 따른 감소
	예탁금	14,400	14,400	-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19	2018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①	전년도이월금	7,990	7,902	88	
	예치금잔액	3,570	3,482	88	
	예탁금잔액	4,420	4,420		
운용수입	합계	4,341	4,474	△133	
당해 연도 조성 ②	소 계	4,341	4,474	△133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626	1,224	△598	융자금 미회 수 (기 융자건 연장)
	예수금				
	이자수입	189	136	53	
	기타수입	44	9	35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482	3,105	377	
	운용지출	합계	4,341	4,474	△133
당해 연도 사용 ③	소 계		993	△993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	618	847	△229	사업 규모 조정으 로 사업비 감액
	융자성사업비	150	145	5	
	기본경비	3	1	2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예탁금				
예치금	3,570	3,481	89		
당해연도 현재액 ①+②-③	조성현재액	7,990	7,902	88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3,570	3,482	88	
	예탁금	4,420	4,420		

<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항목	2019	2018	증 감	사유(상세히)
전년도까지 조성잔액 ①	전년도이월금	279,759	277,226	2,533	
	예치금잔액	246,419	210,556	35,863	예탁금 회수로 인한 증가
	예탁금잔액	33,340	66,670	-33,330	예탁금 회수로 인한 감소
운용수입	합계	253,534	217,390	36,144	
당해 연도 조성 ②	소 계	7,115	6,834	281	
	전입금	0	0	0	
	보조금	22	742	-720	국비 (재난지원금 등) 수령액 감소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예수금	0	0	0	
	이자수입	6,927	5,938	989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기타수입	166	154	12	
	예탁금원금회수	33,330	33,330	0	
	예치금회수	213,089	177,226	35,863	예탁금 회수로 인한 증가
운용지출	합계	253,534	217,390	36,144	
당해 연도 사용 ③	소 계	5,379	4,301	1,078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	5,379	4,301	1,078	무더위 쉼터 사업비 증가
	융자성사업비	0	0	0	
	기본경비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지출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	248,155	213,089	35,066	
당해연도 현재액 ①+②-③	조성현재액	281,495	279,759	1,736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예치금 (사고이월포함)	248,155	213,089	35,066	예탁금 회수로 인한 증가
	예탁금	33,340	66,670	-33,330	예탁금 회수로 인한 감소

<표>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집행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기금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미집행액	미집행률	
합계	20	11,098	7,440	0	3,658	33.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1	821	745	0	76	9.3
	장애인복지계정	1	700	698	0	2	0.2
	자활계정	5	638	618	0	20	3.1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3	8,939	5,379	0	3,560	39.8

-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경비는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기금의 경우에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금운영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을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재할용된다는 점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과다계상하고, 지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의 기한도래 채권액의 경우 3억 2백만원 전액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을 통한 공동생활주택 노인의 집 운영은 주택을 2년 단위로 재계약(갱신)하는 사업으로 해당 채권액을 연장하였음..
- 2019회계연도 기금융자사업은 3개 사업으로, 당초 지출계획현액 26억 5천만원의 25.5%인 6억 7천 5백만원이 미집행된 바, 2018회계연도(불용률 22.0%)와 비교하여 지출계획 후 집행되지 못한 불용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기금의 성격상 불용액이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재활용되는 특징이 있으나, 매년 연례적으로 기금지출사업예산을 사고이월하여 예산불용이 되어 다시 예산 재편성의 순으로 기금지출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불용예상액을 예치금이나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변경하여 이자 수입을 증가시키는 수익창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기금별 용자사업 집행총괄표

기금	사업수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3	2,650	1,975	0	675	25.5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	150	75	0	75	50.0
	장애인복지계정	1	2,300	1,750	0	550	23.9
	자활계정	1	200	150	0	50	25.0

-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주관부서는 지출계획 수립 당시부터 정밀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재원의 특성상 사업 추진에 대한 의욕과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과도하게 증액하고 있는 바,
- 기금 지출사업예산 편성시에 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지출사업예산 이월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효율적

기금운영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예산수요를 보다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금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재원의 안정화로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반면 기금이 남설되거나 목적 및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저해할 수 있음.²¹⁾
- 기금의 수익률을 보면 장애인복지계정을 제외한 노인복지계정과 자활계정 및 구호계정은 연 1% 후반대의 수익률을 얻는데 그치고 있음.
 - 이는 개별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에 예치하거나 이율이 분기별로 변동되는 정기예금에 예탁함으로써 기금별 예탁금에 대한 이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복지정책실 개별 기금이 1% 후반대의 기금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사료됨.
 - 앞으로 기금별 여유자금과 연도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에 발생하는 불용예상액 등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장기성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요구불예금 등에 예치하여 기금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수시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1) 서정섭(2019),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89-111